

「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」 포항시 중소기업 탄소저감 지원 탄소중립 컨설팅 기업(공급기업) 모집 공고

포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술 강화 및 탄소중립 시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'2026년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'에 참여할 공급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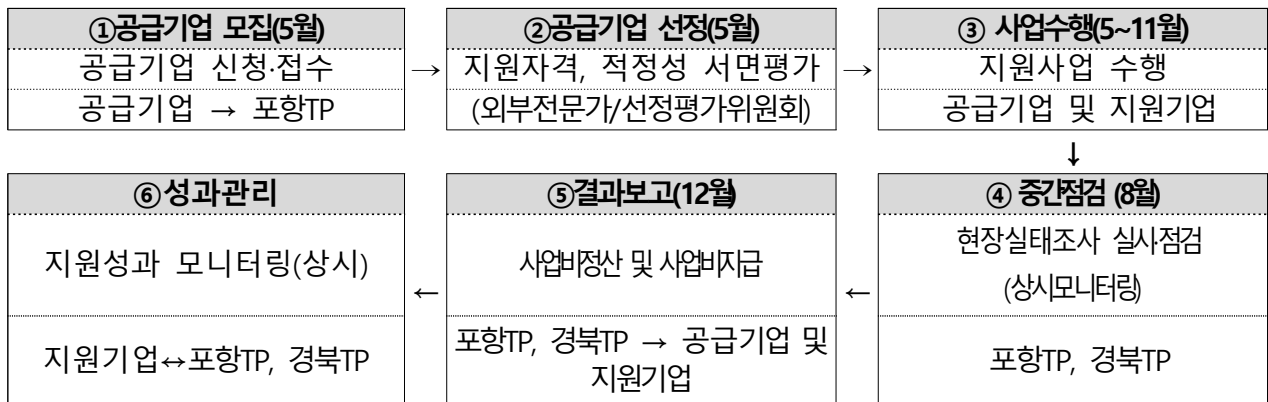
2026년 5월 19일
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

1 모집 개요

- 사업명 :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
- 지원내용 : 탄소중립 컨설팅

프로그램	지원내용	최대지원금액(천원)
탄소 인벤토리 구축 지원	-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원 규명, 배출량 산정 등 탄소 인벤토리 구축 및 컨설팅 - 기업의 지속가능한 탄소관리 체계 수립	4,000

- 모집기간 : 2026년 5월 19일 ~ 5월 26일
- 추진절차



2 공급기업 모집·선정 계획

- 모집목적 : 『포항시 중소기업 탄소저감 지원』 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기관(기업) 선정
- 신청자격 : 경상북도 소재의 에너지진단 전문 기관(기업)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 진단기관으로 등록된 기업 및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9조에 해당하는 기업
 - ※ 공고일 기준 사업장이 경상북도 내 있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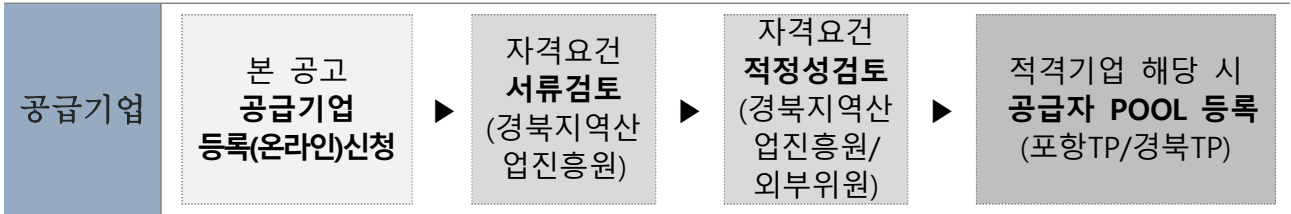
<공급기업 적정성 평가기준>

구분	적정성 평가 검토기준
공통 필수	·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여부
	·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자 여부
	· 사업자등록 여부(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등록 필수)
	· 접수마감일 기준,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해당 여부
	· 지원기업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여부
	· 사업 수행에 있어 법적·윤리적 문제 발생 시, 책임이행 여부
	·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할 의향 여부
	· 문제 발생 시, 사업 주관기관의 중재에 따를 의향 여부
	· 수행 결과물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정될 시, 보완작업 착수 또는 비용삭감 등에 따를 의향 여부
평가요소	·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해당하는 장비 및 인력 확보
	· 최근 3개년 에너지 진단 실적
	· 에너지 진단 분야 업력 기간
	· 정부 및 지자체 에너지 진단 지원 사업 참여 경험 및 계획 수립 실적여부

□ 선정방법

○ 평가방향 : 등록요건을 충족한 공급기업(관)에 한하여 『포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』 사업 참여 가능

○ 평가절차 : (1차) 요건검토 (2차) 외부위원평가



- (1차평가) 요건검토

- (2차평가) 외부위원평가 : 공급기업(관) 모집공고를 통한 신청서류의 서면평가

☞ 평가절차

- ① 적정성 평가 검토기준을 토대로 공급기업(관) 제출자료를 평가
- ②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필요서류 및 부적격 기업분류
- ③ 종합점수 평균 70점 이상 기업을 공급기업으로 선정

□ 평가지표 및 배점

구분	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
정량평가	정량지표	- 에너지 진단 실적	10
		- 에너지 진단 업력 기간	10
정성평가	기업 역량	- 장비 및 인력 확보 현황	25
		-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 실적	25
	추진계획	- 서비스 지원계획	20
		-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	10
합 계			100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자료	제출부수	비고
1	수행계획서 1부	1	날인 필수
2	사업자등록증 사본	1	
3	고용보험가입자 명부(신청일 기준)	1	
4	최근 3개년('23~'25년) 재무제표 *국세청발급, 2025년 결산미확정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	각1부	
5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신청일 기준)	각1부	
6	최근 3년 주요실적 증빙 사본, 기타 공급기업 소개자료 *실적증빙서류 : 상세납품내용이 기재된 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	각1부	

□ 부적격대상

- 휴·폐업 중인 기업, 기업의 부도,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- 제출서류 미비 등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개인 전문가는 동 사업의 공급기업 역할 수행 불가(선정불가)

3 기타사항

□ 신청제외

-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,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- 공고일 기준
 - 부도, 휴폐업,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)
 - 부채비율이 5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(단,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)
-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신청기업,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